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1

발의년월일 : 2009. 6. 3
발 의 자 : 김영길 의원외 5명

1. 개정이유

○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공포('09.4.1)됨에 따라

○ 동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개정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겸직신고(안 제4조, 신설)

•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함.

•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함.

•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영리행위의 제한(안 제5조, 신설)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함.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

4. 기타사항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표준 조례안 참고.

5.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별지〕”를 “별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별지를 별표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생한다. 다만 제4조, 제5조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제2조 관련)

우리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다음 사항들을 윤리실천 규범으로 삼을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
3. 우리는「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한다.
4.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5. 우리는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 한다.
6. 우리는 공사 생활에 있어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여 구민에게 모범을 보이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7. 우리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함은 물론, 구민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8.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
9. 우리는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지 아니한다.
10. 우리는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 년 월 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재 직 기 간		
	보 수	(택일)연 원 월 원	전 화 번 호		
	주 소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명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라 한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준수하여야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별지〕와 같다.	제2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신설〉	----------
	-------별표----------.
	제4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1.~2. (생략) 3. 우리는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 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한다. 4.~10. (생략)	〔별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제2조 관련) 1.~2. (현행과 같음) 3. ------「공직자윤리법」---------- ----------. 4.~10. (현행과 같음)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691)

1. 의 안 명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09. 6. 3(수)

나. 제 출 자 : 김영길 의원외 5명

다. 위원회 회부 : 2009. 6. 4(목)

라. 위원회 심사 : 2009. 6. 15(월)

3.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박문태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공포('09. 4. 1)됨에 따라

❍ 동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명 개정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겸직신고(안 제4조, 신설)

•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함

❍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함.

•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영리행위의 제한(안 제5조, 신설)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함

4.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

5. 기타사항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표준 조례안 참고

6. 검토보고

❍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위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한 내용으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